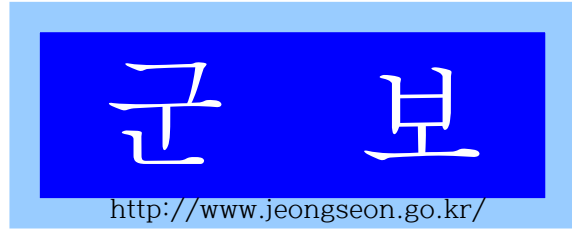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46호 2023. 11. 20. (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986호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1
- 정선군 조례 제2987호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4
- 정선군 조례 제2988호 정선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9
- 정선군 조례 제2989호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12
- 정선군 조례 제2990호 정선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 조례……………16
- 정선군 조례 제2991호 정선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8
- 정선군 조례 제2992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22
- 정선군 조례 제2993호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25
- 정선군 조례 제2994호 정선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28

- 정선군 조례 제2995호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32
- 정선군 조례 제2996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37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91호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41
- 정선군 규칙 제1392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50
- 정선군 규칙 제1393호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54
- 정선군 규칙 제1394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57
- 정선군의회 규칙 제595호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6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92회 정선군의회(2023. 10. 30.) 및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1. 10.)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86호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한다) 및” 을 “한다) 제41조 및” 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정수의 2분의 1범위” 를 “위원회 또는 사무과에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7조에서 제51조까지” 를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 ----- 한다) 제41조 및 ----- ----- ----- 위원회 또는 사무과에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별 제47조에서 제51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 -----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으로 정책지원관 정원이 모두 반영되어 조례에 표시된 정책지원관 배치 기한 및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 배치 기한 문구 삭제 및 정책지원관의 배치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

-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삭제 → “위원회 또는 사무과에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수정

나.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확대(안 제5조제2항)

- “법 제47조에서 제51조까지” →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로 수정

제292회 정선군의회(2023. 10. 30.)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9. 22.)에서 의결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87호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촉해제)” 를 “(위원의 해촉)”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위원이 제9조제1항,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9조(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u> <u>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위원회의 안건심의 등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회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u> <u>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u>	<u>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u> 1. <u>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 2. <u>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u> 3. <u>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u> 4. <u>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u> 5. <u>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u> <u>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u>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촉해제)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u>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u> <u><신설></u> ② (생략)	<u>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u> <u>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u>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u><삭제></u> 6. <u>위원이 제9조제1항,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으로써
나. 위원회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
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다. “그 밖의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모호한 조항 삭제 등 해촉요
건을 명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제1항)
-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
 -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
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
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
우
 -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 나.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제2항)
- 다. 위원의 해촉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사유
가 발생할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제1항)
- 라. 위원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함에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
우에도 해촉 가능하도록 신설(안 제10조제1항제6호)

제292회 정선군의회(2023. 10. 30.)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9. 22.)에서 의결된 정선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88호

정선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특성과 정선군민의 요구가 반영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자치경찰 선진화를 위한 견학 및 교육 지원방안
6. 그 밖에 지역 치안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선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선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 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 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선군의 회, 정선경찰서, 정선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 강화
- 나. 우리 군 특성 및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노력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라.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5조 ~ 제6조)
 - 계획 수립은 정선군의 주요 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 지원 사업은 생활안전 분야, 여성·청소년 분야, 교통 분야,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등
-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안 제7조 ~ 제8조)
 - 군수 소속으로 자치경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제292회 정선군의회(2023. 10. 30.)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9. 22.)에서 의결된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89호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군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는 봉사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면에 조직된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정선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방범대는 충실한 활동으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원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로, 정선군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 단체로 등록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제5조(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법활동 대원 간식(야식)비
5. 상해보험가입비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법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합체육대회 경비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으며, 다음연도 지원예산을 가감할 수 있다.

제6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법대 및 연합대는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법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경비를 지원한 방법대의 그 사용 및 활동실적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서장과 협의하여 방법대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법대 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방법대 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시상
3.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군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범대의 예산 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경비지원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항 수정, 삭제 등 조례 정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책무(안 제3조)

-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노력

다.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정산(안 제4조 ~ 제6조)

- 대상은 정선군자원봉사센터에 봉사 활동 단체로 등록 후 1년 이상 방법 활동을 수행한 방범대 및 연합대
-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 1호부터 6호의 경비를 방범대에 지원
또한, 연합대도 지원 가능토록 함

라. 지원중단 및 지도·감독(안 제7조 ~ 제8조)

마. 포상(안 제9조)

제292회 정선군의회(2023. 10. 30.)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9. 22.)에서 의결된 정선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90호

정선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 조례

정선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정선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는 1987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공인회계사를 고문으로 위촉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며, 행정안전부의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정선군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

제292회 정선군의회(2023. 10. 30.) 및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1.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91호

정선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정선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에 한정하여 우선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정선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정선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차량의 이동 조치) 군수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군수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표지(제5조 관련)

1. 바닥면

가. 규격 : 가로 2.3미터, 세로 5미터

나. 도안



2.

3. 안내표지판

가. 규격 :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

나. 도안



☐ 제안이유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 및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하였고, 일상 속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안 제4조)
- 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사항(안 제5조)
- 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이동주차 권고 사항(안 제7조)
- 마. 다중이용시설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권고(안 제8조)

제292회 정선군의회(2023. 10. 30.),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0. 13.) 및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1.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92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용료 지원) ① 군수는 공설 화장시설의 개·보수 공사 등으로 인해 관외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사용한 경우, 사용료 실비(實費)에서 별표 3에 따른 관내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망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연고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 개정규정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조의2(사용료 지원) ① 군수는 공설화장시설의 개·보수 공사 등으로 인해 관외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실비(實費)에서 별표 3에 따른 관내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망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연고자로 한다.

☐ 제안이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관내 화장시설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하여 관외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군민에게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비용 경감을 주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9조의 2)

군수는 공설화장시설의 개·보수 공사 등으로 인해 관외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사용한 경우, 사용료 실비(實費)에서 관내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 규정 (부칙 안 제2조)

안 제9조의2 개정규정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292회 정선군의회(2023. 10. 30.)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9. 22.)에서 의결된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93호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5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준속기한) 재단의 준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준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준속기한) ----- -- 2025년 12월 31일----- ----.--, ----- ----- -----.

☐ 제안이유

정선읍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기한(2025년 3월 31일까지)에 따라 상권활성화재단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후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존속기한 연장(안 제11조)

-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제292회 정선군의회(2023. 10. 30.) 및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1.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94호

정선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읍·면출장소
 - 나. 정선군의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제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해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4. 군이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우수업소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회용품(컵·장바구니 등)을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소매업소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1인가구 증가·비대면 소비 급증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여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 등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권장(안 제5조)
- 다.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한 우수업소 선정(안 제6조)
- 라. 1회용품 줄이기 실태조사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 교육·홍보(안 제7조~안 제8조)
- 마. 1회용품 줄이기 공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292회 정선군의회(2023. 10. 30.),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0. 13.) 및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1.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95호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단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①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36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규모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마을공동사업

2. 그 밖에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사업(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주변지역으로 한정한다)
2.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3. 주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제6조(주민지원기금 관리 공무원)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 기금(이하 “주민지원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담당

제7조(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주민지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민지원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한다.

1. 환경과장
2.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주변영향지역의 읍·면장

3.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 대표

나. 지원협의체 구성원

다. 기금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⑥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12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당해년도 정선군 예산편성운영기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기준액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지원된 주민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안 제3조)
- 다.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비율 및 기준(안 제4조)
- 라.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안 제5조)
- 마.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안 제7조 ~ 제11조)
- 바.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안 제12조)
- 사. 주민지원에 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제292회 정선군의회(2023. 10. 30.)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9. 22.)에서 의결된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96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흡연”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통시장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서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통시장의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상인회 회원의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5.·6. 삭제 <u><신설></u> <u><신설></u>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 ----- -----. 1. ~ 4. (현행과 같음) 7.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통시장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서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 ----- ----- ----- - . 다만, 전통시장의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상인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현행	개정안
③ · ④ (생략)	<u>회원의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한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금연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지정 장소 확대(안 제5조제1항제7호 ~ 제8호)

- 1)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통시장
- 2)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서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나. 단서 신설(안 제5조제2항)

다만, 전통시장의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상인회 회원의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한다.

규 칙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0. 13.)에서 의결된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91호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정선군의회, 제1관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다음”으로,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를 “계약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으로 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본문 중 “전결규칙의 규정에 의한다”를 “전결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1조제1항”을 “훈령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칙 제22조제2항”을 “훈령 제12조제1항”으로, “의한다”를 “따른

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22조제3항”을 “훈령 제12조제2항”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기획관”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규칙 제97조”를 “훈령 제77조”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133조”를 “훈령 제103조”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중 “규칙 제135조제1항”을 “훈령 제105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규칙에 따라 군수와 회계관계공무원등이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회계관리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기간의 계산은 각각 계속된다.

< 별표 2 >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1. 제1관서 가. 보건소 나. 농업기술센터 다. 상하수도사업소 라. 교통관리사업소 2. 읍·면 가.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나.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다. 사북읍 행정복지센터 라. 신동읍 행정복지센터 마. 화암면 행정복지센터 바. 남면 행정복지센터 사. 여량면 행정복지센터 아. 북평면 행정복지센터 자. 임계면 행정복지센터	1. 보건소 고한사북지소 2. 신동읍 함백출장소

< 별표 5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기획담당관)	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가 합의 대상임.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생략)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정선군의회, 제1관서, 읍·면가. <u>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u>	<u>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정선군의회, 제1관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다음 --- 계약업무-----. 1. <u>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u>

현행	개정안
<u>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u> <u><신 설></u> ⑥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의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정선군 사무처리전결 규칙」(이하 “전결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2. <u>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u> ⑥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 ----- ----- ----- ----- -----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 ----- ----- -----에 따른다. ----- ----- -----.

현행	개정안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u>전결규칙의 규정</u> 에 의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 ----- ----- -- <u>전결규칙에 따른다.</u> ----- ----- -----.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도록 하며,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 ----- <u>훈령 제11조 제1항</u>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u>의하여</u>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2. ----- -- <u>따라</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u>규칙 제22조제2항</u> 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u>의한다</u>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u>훈령 제12조제1항</u> ----- ----- ----- <u>따른다.</u>
② <u>규칙 제22조제3항</u> 에 따라 기	② <u>훈령 제12조제2항</u> -----기

현행	개정안
<u>획관</u>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u>의한다</u>.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u>규칙 제97조</u>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생략)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u>규칙 제133조</u>에 따른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u>규칙 제135조제1항</u>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u>획담당관</u>----- ----- <u>따른다</u>.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u>훈령 제77조</u>-----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u>훈령 제103조</u>----- ----- -----.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u>훈령 제105조제1항</u> ----- ----- ----- -----.

□ 제안이유

- 가.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명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 나. 정선군 조직개편 등에 따른 회계관직과 직위명의 변경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규칙 명칭 변경(제명)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 나. 관련 법령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제6항)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

- 다. 법령 변경에 따른 적용 조항 변경(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 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추가(별표 2)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제1관서에 교통관리사업소를 신설

- 마.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 변경(안 제6조제2항, 별표 5)

기획관,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변경

- 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춘 조문 정비 및 조항 정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0. 13.)에서 의결된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92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용료 지원)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5조의2(사용료 지원) 조례 제9조의2</u>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u>제13호서식의 화장시설 사용료 지급신청서를</u>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휴대전화		
	지급은행	은행	계 좌 번 호			
사 망 자 화장내역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사 망 일	. . .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의 ()		
	화 장 일	. . .	화 장 장 소			
신청금액		원				
※ 첨부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 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시설 사용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정 선 군 수 귀 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안이유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5조의 2)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0. 13.)에서 의결된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93호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4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만원”을 “7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피해방지단 운영지원)	제4조(피해방지단 운영지원)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고라니 1마리당 <u>4만원</u>	1. ----- <u>5만원</u>
2. 멧돼지 1마리당 <u>5만원</u>	2. ----- <u>7만원</u>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 시·군별 상이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별 지원금 차등수혜를 해결하기 위해 포상금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기준 변경(안 제4조제2항)

- 1) 고라니 1마리당 4만원 → 5만원으로 변경
- 2) 멧돼지 1마리당 5만원 → 7만원으로 변경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9. 22.)에서 의결된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94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통시장은 시장으로 통하는 각 출입문 경계선 안 통행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정선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4. (생략) <신설>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 ----- ----- ----- -----. 1.~ 4. (현행과 같음) 5.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통시장은 시장으로 통하는 각 출입문 경계선 안 통행로로 한다.

[별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등(제3조제1항 관련)

1. 표시방법

- 가. 표지판의 모양과 규격 및 재질, 설치 및 표시방법은 금연구역 지정 장소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 나.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등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표지판 내용

구 분	세 부 사 항
설치방법	지주식 또는 현수식, 스티커 부착, 노면표시 등
내 용	1. 도시공원 : ‘이 공원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는 ‘금연공원’ 2.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경계선 안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 승차대(또는 표지판)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전통시장 : 전통시장 출입문 경계선 안의 통행로는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밖의 표시사항	- 금연로고 및 금연구역 등 표시 - 정선군 CI 표시

3. 설치 및 관리

가. 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
- 2) 군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마.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 제안이유

가.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내 금연구역 지정 장소의 경계 신설(안 제2조제5호 및 별표)

각 출입문 경계선 안 통행로

나. 조례와 불일치 사항 개정(별표)

금연구역 내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 변경(3만원 → 5만원)

제292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3. 10. 30.)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0일

정선군의회 의장

정선군의회 규칙 제595호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제6조”를 “규칙은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7조”로 한다.

제2조제6호 및 제7호 중 “본회”를 각각 “정례회”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제51조와”를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7조----- ----- -----.
제2조(사무과장)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5. (생략)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 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 14. (생략)	제2조(사무과장) ----- -----. 1. ~ 5. (현행과 같음) 6. 정례회 ----- ----- 7. 정례회 ----- ----- 8. ~ 14. (현행과 같음)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지 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에 관련된 의 정활동을 지원한다. 1. ~ 4. (생략) 5. 그 밖의 법 제47조부터 제51조 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제4조(정책지원관)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제52조 까지와 제83조에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